

研究論文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

- 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이 옥**

I. 서론	IV. 통감부 시기 國祀와 帝室祀
II. 갑오개혁기 祀典의 축소	V. 결론
III. 광무개혁기 황제의 의례	

I. 서론

종교사에서 근대적 종교지형을 보여주는 지표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政·敎分離이다.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종교의 텃밭에서 정치 경제, 교육 등 제반의 문화 영역이 벗어나 독자적인 자기 논리를 개발하는 데에서 근대의 시작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교분리를 통해 종교는 공적인 자리에서 축소 되어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私事化 과정을 겪게 된다. 이 정교분리의 개념은 서구 기독교 사회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우리 근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된다. 사회 전반의 지배 이념이었던 유교들에서 벗어나 세속 정부와 경제 그리고 문화들이 형성되고, 국교의 위치에 있었던 유교는 종교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기독교, 불교, 신종교들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와 달리 우리에게서 정치와 종교, 사회와 종교를 구분하는 명확한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3-AM151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종교학 전공

선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교회라는 조직을 애초 유지하고 있었던 기독교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는 각자의 꾀대를 쉽게 세울 수 있었다.¹⁾ 하지만 우리 사회 지배이념이었던 유교는 아직도 종교인가 아닌가라는 논의에 있을 만큼 애매한 경계선을 오가고 있다. religion의 번역어로 ‘종교’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종교의 자리를 마련하였지만 우리 문화에서 볼 때 오랜 기간 낫선 자리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서 개항 이후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정치’와 ‘종교’가 아닌 ‘국가’와 ‘제사’의 개념을 사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항 이후 근대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국가 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조선시대 국가 제사는 일반 백성의 사적인 제사와 구별되는 공공의 제사였기 때문에 국왕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이 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제사는 전문적 분업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운영되었다. 제사를 위해 희생 제물 제기 壇廟의 관리 제문의 작성 등은 예조를 중심으로 한 특정 관청의 소관 업무로 분업화되었지만 제향을 진행하는 헌관과 집사자들은 관료집단 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관료에게서 제사는 政務와 구분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소임이었다. 제사는 기존의 행정적인 업무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수행할 의무이자 특권이였다. 이렇게 국정의 중요 업무로 인식된 제사가 근대 이후 새로운 국가 체계 내에서 어떻게 변모하였을까?

1) 서양의 정교분리 원칙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서양 중세 시대 교회와 세속 군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주는 이론은 그레고리 7세의 “two sword doctrine” 이었다 이는 교황은 정신적인 劍을, 황제나 영주는 세속적인 검을 분담한 것인데 교황은 너무나 고귀해서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일시적으로 통치자를 임명해서 세속적인 검을 위임한다는 교의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종교개혁 시기 루터에 의해 “two kingdom doctrine” 으로 바뀌게 된다 이 교리는 은총과 신앙의 천상왕국과 죄와 죽음의 지상왕국을 철저히 분리하고 도덕법이건 시민법이건 모든 법률과 정치적 권위를 지상의 왕국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전에 교회에 소속되었던 법률적 권위를 세속적 통치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교회와 국가는 동등한 실체로 인정받게 된다.[장석만, 「19세기말~20세기 초 한·중·일 삼국의 정교분리담론」, 『역사와 현실』 4호(1990), 194쪽 정교분리 담론은 이와 같이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인 변화가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와 종교라는 일반 범주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는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교분리 담론은 ‘자연과 초자연의 구분’, ‘육체와 정신의 구분’, ‘공과 사의 구분’ 등과 중층 구조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위의 논문, 218~221쪽)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갑오개혁 이후 국가제사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것은 근대 시기에 들어오면서 폐지되거나 신설되는 제사들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것의 치폐가 지닌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개항 이후 국가 제사의 변화를 甲午改革期, 光武改革期, 統監府時期로 구분하여 고찰할 것이다. 갑오개혁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이때부터 국가사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관파천 이후의 광무개혁기는 대한제국의 성립에 따라 국가 의례 전반이 새로 개편되던 시기이다. 그리고 일제의 통감부 시기는 광무연간에 이루어놓은 제국의 국가제사를 대부분 폐지하면서 식민지화를 진행하였던 시기이다.

이러한 세 시기는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의례의 증감으로 본다면 갑오개혁기나 통감부 시기는 사전의 축소를 지향한 반면 대한제국기는 황실을 중심으로 사전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했던 시기이다.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는 근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의례의 축소는 그 자체로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근대에서 사전의 축소는 합리성 외에 외세의 침탈이란 요소가 덧붙여지고, 사전의 확대는 전통 또는 독립과 매개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전개혁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대한제국기 국가 제사 하나하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부른 결론을 내기보다 특정한 의례가 폐지되거나 새로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들에 천착하였다. 특히 대한제국기에 나타나는 황실 관련 의례에 대해 주목하여 근대 이후 사전의 변화를 균형 있게 파악하고자 하였다.²⁾

II. 갑오개혁과 祀典의 축소

개항 이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근대화는 점차 국가의 생존을 위해 거부할 수

2) 대한제국기 국가 제례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박중서, 「한말 국가제사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김문식·송지원, 「국가제례의 변천과 복원」, 『서울 20세기 생활·문화 변천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학연구소, 2001).
최석영, 「한말 일제 강점기 國家祭禮 공간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권(2002)

없는 대세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근대화는 서구 물질 문명의 수용만이 아니라 봉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개혁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1894년 갑오개혁을 들 수 있다. 갑오개혁은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부터 1896년 2월 아관파천까지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진 개혁운동이다.³⁾ 갑오농민전쟁이 발달의 원인이었던 갑오개혁은 청·일의 외세에 의해 왜곡된 방향으로 흘렀지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근대적 개혁이었다. 본고에서 다룰 국가 사건의 변화 역시 이 갑오개혁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갑오개혁을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왕 의정부-육조”체제로 구성된 기존의 정부조직을 “궁내부 의정부(8아문)”체제로 개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의 변화는 왕실업무를 궁내부 산하로 통합시켜 국왕의 국정 간섭을 배제하고, 근대 정부의 모습을 띤 의정부와 내무, 외무, 탁지, 법무, 학부, 공부, 군부, 농상 이란 8아문체계를 통해서 국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⁴⁾ 군주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폐지하고 내각 중심의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것이다. 이렇게 국왕과 국정의 분리를 위해 마련된 궁내부와 의정부의 이원적 체계 속에서 국가제사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까?

갑오개혁기 정부 개편 속에서 국가 제사는 宗伯府에 귀속되고, 결국에는 宮內府 소속 掌禮院에 귀속된다. 정부 조직에서 의정부와 함께 한 축을 차지한 궁내부는 정치적으로 국왕의 국정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전근대적 국가에서 중요시되었던 왕실과 종친 그리고 제사의 일들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봉건시대 국가의 大事로 간주되었던 제사는 근대로 들어오면서 왕실이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존재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근대 국가의 주요 업무로 구분된 내무, 외무, 탁지, 법무, 학부, 공부, 군부, 농상이란 의정부의 8아문의 범주에서 제사는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국왕과 왕실의 업무를 관장하는 궁내부의 업무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⁵⁾

한편, 이러한 정부 조직의 변화는 제사를 준비하는 담당 관청의 조직 이동만을

3) 한철호, 「갑오개혁 주도세력의 현실대응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1 권(1999), 170 쪽

4) 갑오개혁 이후 정치체제 및 궁내부의 변화는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 제23집(1990)을 참조하였다

5) 1895년 4월 1일 행정 관제의 개편으로 인해 이 8아문 체제는 7부 체제로 바뀐다. 이로 인해 정부 조직은 外部, 内部, 度支部, 軍部, 法部, 學部, 農商工部 등 7부로 구성되었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의정부와 궁내부의 분할은 제사에 참여하는 제관의 범위를 구분하는 범주로 사용되었다는 데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1. 議政府 각 衙門의 높고 낮은 관리들은 날마다 일을 보는 데서 다른 일을 겸할 수 없으며 중앙과 지방에 祭官을 파견하지 말도록 규정을 정하고 제관을 파견하는 한 가지는 宗伯府에서 따로 규례를 정하고 지시를 받아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⁶⁾

위의 글은 1894년 8월에 군국기무처에서 건의한 것으로 국가 제사의 제관을 차출하는 데에 의정부 관리들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기존의 남설된 정부 조직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제관을 차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정부 관리들을 제관으로 파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숫자와 관계없이 정부 조직의 본령에 있는 의정부 관원을 제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사의 공적인 성격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제관은 특정한 제향을 제외하면 문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각 제향의 제관에 정해진 품계에 따라 제관이 차출되었으며, 차출된 관리는 자신의 업무를 중단하고 受戒와 齋戒에 참석하여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의 진행을 맡았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관리는 행정을 맡았을 뿐 아니라 제관의 업무도 자연스럽게 맡았기 때문에 국가의 정부와 제사는 분리된 범주로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와 제사와 정부는 구분된 범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전자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가 아닌 주변적으로 밀려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기간 국가 사전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은 제 2차 시기인 1894년 11월부터 이루어진다.⁷⁾ 이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 달 21일에 반포된 칙령 제7호

6) 『高宗實錄』 卷32, 高宗 31年 8月 28日(壬申)(이하 실록의 번역은 ‘C.D-ROM 고종순종실록’을 참조하였다)

7) 갑오개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제 1시기의 개혁(1894년 6월 25~11월 21일)은 1894년 6월 25일에 설치되어 11월 13일에 폐지된 군국기무처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이때 중심 세력은 김홍집, 유길준 등이었다. 제 2시기(1894년 11월 21일~1895년 7월 6일)는 1894년 11월 21일에 성립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박영효가 개혁의 실권을 잡았던 시기이다. 제 3차 개혁(1895년 7월 7일~1896년 2월 11일)은 박영효가 실각하고 민비 시해 사건을 계기로 김홍집, 유길준이 개혁을 주도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개혁들은 일본의 후원에 의해 이

에서 보여지듯이 형식적인 것[浮文]을 줄여서 간소화하는 것이었다⁸⁾ 이에 따라 궁내부에서는 종묘에 행차하는 의식을 간소화하고 제향시 봉심과 감찰을 헌관이 겸하여 맡도록 하는 등 부분적인 개혁을 시행한다. 그리고 12월 16일은 사전의 大小享祀를 의정하여 올리라는 칙령이 내려지고⁹⁾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전 개혁안이 1895년 1월 14일에 확정된다¹⁰⁾ 이 때 김홍집·박영효 내각에서 올린 개혁안(이하 <갑오개혁안>)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 개혁안은 국가 사전을 대·중·소사와 속례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속하는 제향과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폐지할 제사를 적고 있다.

위 <갑오개혁안>에 나타난 시대적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연의 변화를 관장하는 신들이 사전에서 배제되었다 <갑오개혁안>에서 폐지를 명시한 제사들은 雩祀, 司寒, 祈雨, 禳祭, 祈雪, 馬祖, 四賢祠 등 총 7개이다. 이 중에서 사현사를 제외하면 모두 자연의 변화를 순조롭게 하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들이다.¹¹⁾ 특히 우사, 기우, 영제, 기설은 가뭄이나 홍수의 재난을 물리치기 위해 신의 도움을 비는 기양의례에 속하였다.¹²⁾ 가뭄

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민비 시해라는 극한적인 상황까지 몰고 갑에 따라 국왕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1896년 2월 11일에 러시아공사관으로 국왕이 망명함에 따라 중단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0-청일전쟁과 갑오개혁』(2000), 8쪽

8) 勅令 第七號 “從前儀式之稍涉浮文者 一切節省 務期簡當”(開國 五百三年十月二十日)[송병기 등 편,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1』(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1), 125 쪽

9) 『高宗實錄』卷32, 高宗31年 12月 戊午日.

10) 『奏本』(奎 17702), 奏本 第85號(開國五百四年正月十四日奉),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議政府編, 『奏本·議本 1』(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48-49 쪽

11) 폐지되지 않은 제사 중에서 자연의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는 원구, 사직, 풍운뢰우, 기미성, 선농, 선잠, 산천신 등이 있다 이러한 제사들은 자연과 연관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원구는 만물의 주재자인 지고신으로 천자의 정치권을 표상하였으며 사직은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 토지와 곡직신을 가리킨다. 기미성은 제천의례를 거행할 수 없던 조선시대 상황에서 동쪽을 담당하는箕星과 尾星을 제사하여 조선의 독립적 주권을 드러내고자 했던 제향이다. 선농과 선잠은 농상의 풍작을 비는 기원의례이지만 또 한편으로 농상의 장려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왕의 중요한 의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의례들에 비해 풍운뢰우와 산천신은 자연신의 성격이 가장 농후한 신들이었다. 하지만 풍운뢰우는 환구단이 복원되면서 독자적 제향이 사라졌다. 또한 조선시대 산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비구름을 일으키는 강우였기 때문에 갑오개혁에서 기우제를 폐지한 것은 산천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는 조치였다.

12) 雩祀가 5월에 지내는 정기 기우제를 말한다면 祈雨는 실제 비가 오지 않을 때 사직과 종묘 이하 여러 제단에서 순차적으로 지내던 각종 기우제를 가리킨다. 장마비가 계속 될 때에는 禳祭를 통

<표 1> 갑오개혁기 사건의 변화

	祭名	朝鮮後期 祀典*	「甲午改革案」(1895.1)	비고
大祀	園丘	-	冬至·正月上辛	신설(1년 2차)
	宗廟	四孟朔上旬·臘享·俗節·朔望	四孟朔上旬 臘 朔祭 告由 朔祭兼行	속절 폐지(1년 5차)
	永寧殿	春·秋孟朔上旬	春·秋孟朔上旬	1년 2차
	社稷	春·秋仲朔上戊, 臘享 祈 穀(孟春上辛)	春·秋仲月上旬, 臘	기곡제→환구
	大報壇**	三月 上旬	-	폐지추정
中祀	景慕宮	四仲朔上旬·臘享	四仲朔上旬 朔祭	남향폐지(1년 4차)
	風雲雷雨	春·秋仲月上旬	-	환구단 합사
	文廟	春·秋仲朔上丁	春·秋仲朔上丁	1년 2차
	歷代始祖	春·秋仲月	春·秋仲月	1년 2차
	尾箕星	(高宗代 新設)	正月上寅	1년 1차
	先農	驚蟄後亥日	驚蟄後亥日	1년 1차
	先蠶	季春上巳	季春巳日	1년 1차
	雩祀	孟夏上旬	폐지	폐지
小祀	關王廟	驚蟄·霜降	南(驚蟄)·東(霜降)·北(五月中旬)	1년 2차→1년 1차
	三角山·木覓山·漢江		北岳·漢江·木覓(春秋仲月)	1년 1차
	司寒	春分·季冬	폐지	폐지
	中霽	季夏土旺日	-	폐지추정
	啓聖祠	春·秋仲月上巳	-	폐지추정
	四賢祠		폐지	폐지
	宣武祠	春·秋季月中丁	-	폐지추정
	靖武祠	(高宗代 新設)	-	폐지추정
	蠶祭	驚蟄·霜降	降霜	1년 1차
	厲祭·城隍祭	清明·7月15日·10月1日	十月初一日	1년 3차→1년 1차
	馬祖	仲春中氣後剛日	폐지	폐지
	祈雨·祭祭·祈雪		폐지	폐지
俗禮	永禧殿·潛源殿	(眞殿)臘,俗節	永禧殿(冬至)·潛源殿(誕辰)·慶基殿(端午)	속절폐지
	華寧殿	誕辰	華寧殿(誕辰)	
	各陵園墓	臘·俗節·朔望 (去廟則寒食·忌辰)	寒食,秋夕,忌辰 祧位 只寒食	속절축소
	肇慶廟	春·秋仲月上旬,俗禮	春·秋仲朔上旬	속절폐지
	各廟宮	四仲朔·春秋祭·俗祭	冬夏二至(永昭廟 儲慶宮 禮賓宮,延祐宮,宣禧宮 只冬至)	속절폐지, 4차→2차, 2차→1차

* 조선후기 사전은 『春官通考』과 『高宗實錄』을 참조하였음

** 대보단 제향은 『皇壇儀(奎4308)』를 참조하였음

시 12 단계로 구분되어 순차적으로 지내는 기우제는 降雨를 위해 각종 신에게 호소하고 龍神을 부리는 종교·주술적인 의례였다. 기타 다른 제사들은 기우제보다 규모나 회수면에서 적지만 농경을 기반으로 한 전통사회에서 자연의 변화를 주관하는 신들을 위해 거행되었던 것이다. 근대라는 시기를 엄두에 둔다면 이러한 제사의 폐지는 자연 또는 자연력이 제사의 대상에서 과학의 대상으로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중국과의 제향적 단절을 통해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갑오개혁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사들을 이전의 사전과 비교해서 찾아보면 大報壇, 中霽, 風雲雷雨壇(南壇), 啓聖祠, 華寧殿, 宣武祠, 靖武祠 등이 있다. 이 자료만으로는 이들을 폐지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갑오개혁안을 바탕으로 1895년에 만들어 배포한 <大朝鮮開國五百五年歲次丙申時憲曆> 통해 볼 때 폐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³⁾ 이 역서에는 <갑오개혁안>에서 폐지라 기록한 것 이외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위 7가지 제향 역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중 大報壇 啓聖祠¹⁴⁾, 宣武祠¹⁵⁾, 靖武祠¹⁶⁾ 등은 중국인을 모신 제향들이다. 특히, 임난 때 도와준 것에 대한 보은과 대명의리론의 상징인 대보단, 임난 때 원병으로 왔다 죽은 명나라의 장수 형개, 양호 및 전몰 군사들을 모신 선무사, 임오군란 때 우리나라에 왔던 청나라 오장경 제독을 위한 정무사 등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해 개기기를 기도했으며,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을 때엔 산천에서 祈雪祭를 지냈다.

- 13) 觀象所 編, 「(大朝鮮開國五百五年歲次丙申時憲曆)(奎章閣所藏 古7300-16 1-2. 개국 505 년은 1896년(건양1)이다. 이때부터 「세차 시현력」 또는 그 이후의 「명시력」 상단에 제향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 해에 기록된 제향일은 <갑오개혁안>과 거의 일치한다. 물론 이것은 실제 거행한 것을 표기한 것이 아니다. 1896년에는 이전의 의례들이 회복된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것은 <갑오개혁안>을 기초로 1895년에 제작된 것이다
- 14) 啓聖祠는 문묘 대성전에 모셔진 공자 이하 다섯 성인의 부친을 모신 사당으로 1701(숙종27)에 건립되었다. 正位로 叔梁紇(孔자의 父), 東配位에는 顏無繇(顏子の 父)와 孔鯉(子思의 父), 西配位에는 曾點(曾子の 父)와 孟孫氏(孟子の 父)를 모셨다
- 15) 宣武祠는 임난 때 조선에 와서 도와준 명나라 兵部尙書 邢玠와 經理朝鮮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 楊鎬, 그리고 전몰한 명나라 군사를 제향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宣武祠儀軌』(藏2-2516)]
- 16) 靖武祠는 임오군란 때에 조선에 왔던 吳長慶(1834-1884) 제독을 모신 사당이다. 그는 조선에 머무는 동안 고종의 요청에 따라 선발된 조선군인들을 훈련시켰으며, 군인 복식을 계절에 시의에 맞게 개혁하도록 조언하기도 하였다. 1884년에 그가 죽자 고종은 그 다음해에 사당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주었다. 오 제독 이외에 淸 提督統帶 吳兆有, 淸 八隊什長千總 王志春 등 20명의 신위가 있다. [『靖武祠儀軌』(藏 2-2520)]

동시에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있는 제사들이다. 그러므로 당시 청일전쟁의 상황이나 일본에 의지한 개혁 추진세력의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제향의 폐지는 중국과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¹⁷⁾

이러한 제향의 폐지와 더불어 원구제의 복원은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갑오개혁안>은 원구제와 아울러 종묘, 영녕전, 사직을 대사로 규정하고 음악에 八佾舞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것은 제천의례의 복원만이 아니라 제례의 전반적인 의식을 천자의 격식에 맞추어 높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기에 천자에 걸 맞는 의례의 변화 양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원구제의 복원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의 정치 세력이 왕권을 독립국의 상징적 차원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권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가 의례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왕권은 전통적인 제례의 형식보다 국경일과 같은 새로운 형식을 통해 표상되고 있었던 것도 그 원인이었다.

셋째, 俗節祭의 폐지 또는 축소이다. <갑오개혁안>은 제향의 폐지 뿐 아니라 제향의 회수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성, 선농, 선잠, 문묘, 역대시조, 악해독 및 풍운뇌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향에서 그 시행의 횟수가 일정 정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축소는 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의 명절에 지냈던 속절제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속절과 연관된 제사들은 대부분 왕실의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宗廟, 景慕宮, 永禧殿, 濬源殿(태조의 진전), 華寧殿(정조의 진전), 肇慶廟, 각각의 陵·園·墓와 廟·宮이 이에 해당한다. 종묘의 정기제는 네 계절 첫 달에 지내는 四時祭와 남향 그리고 속절제로 이루어졌다. 불천위와 지친에 속하는 왕의 능에서는 명절과 기신일에 제사를 지냈으며, 천위의 경우 한식과 기신

17) 이와 관련하여 1895년 2월초 내각회의에서 박영효는 전통적인 조·청 종속관계를 연상시키는 송파 소재 淸帝功德碑를 물어버리고 서대문밖에 있는 영은문, 모화관, 홍제원 등을 헐어버리자는 안을 제의한다. 그러나 김홍집, 박정양 등은 청제공덕비와 영은문의 제거에는 동의하였지만 모화관, 홍제원은 그 명칭을 바꾸어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이 문제는 훈련대대장인 신태휴의 진퇴문제와 결부되어 갑신파와 갑오파간의 대립을 격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공사 이노우에의 중재로 갑오파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마무리되었다. 李瑄根 『한국사: 현대편』(을유문화사, 1963), 461~462쪽

일에 제사를 올렸다. 한편, 조선후기 순조롭지 못한 왕위 계승 과정에서 발생한 궁묘는 궁묘에 들지 못한 국왕의 生親이나 세자와 세자빈의 사당이였다. 여기에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지의 사시제와 정조, 한식, 단오, 추석의 명절에 지내는 속절이 있었다.¹⁸⁾

<갑오개혁안>은 이렇게 조선후기 왕실제향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속절을 배제시켰다. 이것은 국가 사전의 전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개혁이었다. 속절은 각각의 제향을 볼 때 매우 작은 제사이지만 전체의 수가 많고 동시에 거행되기 때문에 제관의 차출 문제를 늘 발생시켰다. 제향의 수가 가장 많은 한식의 경우 모두 單獻일지라도 왕릉에만 37 명의 헌관이 필요하였다. 여기에 宮·園·廟의 헌관까지 합치면 기본적으로 50 여 명에 가까운 헌관이 동시에 있어야 했다. 이들의 헌관과 집사자들을 차출하는 것은 이미 조선후기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근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속절의 배제는 이러한 상황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속절의 대상은 선왕을 비롯한 왕실의 선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향의 축소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이 <갑오개혁안>은 기양의례를 중심으로 한 자연신의 배제 중국 관련 제사와 왕실의 속절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국가 사전 중에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왕실 의례의 축소 등을 통해 근대 국가에 합당한 의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1895년 말까지 이어졌다. 앞서 언급한 <大朝鮮開國五百五年歲次丙申時

18) 개항 이후 일제시대 이전까지 궁묘의 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宮廟	신위	고종 초기 (『祭禮錄』)	갑오개혁	광무연간 : 各宮儀軌 (藏書K2-2401)	음희 ² 개혁
毓祥宮	영조 생모	사중삭제 節祀	(冬夏二至)	사중삭, 절제	춘추제
景祐宮	순조 생모	사중삭 절제	(冬夏二至)	사중삭, 절제	춘추기신
文禧廟	文孝世子	사중삭, 절제	(冬夏二至)	사중삭, 절제	매안
儲慶宮	원종 생모	춘추	동지	춘추	춘추제
大賓宮	경종 생모	-	동지(희빈궁)	-	춘추제
延祐宮	진종 생모	춘추	동지	춘추	춘추제
宣禧宮	사도세자 생모	-	동지	사중삭, 절제	춘추제
永昭廟	懿昭世孫	춘추	동지	춘추	매안
宜賓宮	문효세자 생모	-		-	매안
慶壽宮	정조 후궁 和嬪 尹氏				매안

憲曆>의 역서는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제향일이 기록되어있기 때문이다.

III. 광무개혁기¹⁹⁾ 황제의 의례

1. 갑오개혁의 부정

1895년 8월 을미사변 이후 갑오개혁은 그 근대적 내용과 무관하게 개혁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 갑오개혁 정권은 사실상 소멸되고 국왕 중심의 정권이 만들어진다. 이후 광무개혁의 개혁성과 정치적 행보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지만 갑오개혁기에 마련된 근대적 개혁이 이 시기에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 제사에 한정할 경우 이전의 개혁은 전면 중단되고 전통적 형태로 전환되고 만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던 1896년 7월 24일에 고종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국가의 祀典은 더없이 엄하고 공경스러운 것인데 그때 內閣의 逆臣들이 국명을 잡고서 자의로 재단하고 축소시켰으니 지극히 통탄스러운 일이다. 또한 새 역서와 옛 역서의 날짜는 애초 서로 달라서 정성을 다하는 도리에 미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宗廟·殿·宮과 각 陵·園의 제향을 이전의 법식에 따라 준행할 것이다. 무릇 大·中·小祀의 날짜는 모두 옛 역서를 사용할 것이다.” 또 지시하였다. “園丘·社稷과 여러 山川 및 廟의 향사는 궁내부 대신과 장례원경에게 지시하여 시의를 참작하고 예법을 고찰하여 바르게 고칠 것이다.”²⁰⁾

19) ‘광무개혁’의 기점에 대해서는, 아관파천이 일어난 1896년 2월, 광무연호를 제정한 1897년 8월 설,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10월 설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각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성격은 대체로 동일하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광무개혁의 기점을 아관파천으로 설정하였다. 李玟源, 「대한제국의 성립과 ‘광무개혁’, 독립협회에 대한 연구성과 과제」, 『한국사론 25(한국연구회회고와 전망III)』(국사편찬위원회, 1995), 250-251쪽. 그러나 광무개혁의 종착은 러일전쟁(1904)까지이지만 국가의례의 변화는 광무연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1897년까지로 하였다.

20) 『高宗實錄』卷34, 高宗 33年 7月 24日, “有國祀典 莫嚴莫敬 而伊時內閣之逆臣執命 恣意裁減 已極痛迫 又新舊曆日字 原有差互 其在誠愼之道 尤爲未安 自今太廟殿宮各陵園祭享 一遵舊式

위의 인용문에서 고종은 갑오개혁 때 이루어진 사전의 축소와 태양력 도입에 따른 통탄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종묘와 왕실 의례들을 이전으로 회복할 것, 옛 역서를 사용할 것, 원구, 사직 등의 제사를 현재의 형편과 예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왕실제례 이전의 법식으로 회복하는 것은 갑오개혁의 주 대상이었던 속절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었다. 태양력을 거부하고 이전의 역서로 돌아가는 것 역시 속절의 회복과 연관된 것이다. 사전에서 근대적 시대 상황에 적용하려는 것은 이 왕실 의례를 제외한 환구, 종묘, 사직 등의 몇 가지 제사에 한정하고 있다. 동년 8월 14일 궁내부 대신 이재순이 마련하여 올린 제향의 규정은 이런 고종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사전을 이전의 법식에 맞추어 회복한 것이었다.²¹⁾ 이러한 복원에는 정기제만이 아니라 기우, 기설, 영제 등의 기양의례까지도 포함되었다.

한편, 1896년 12월부터 그 동안 중단되었던 廟·殿·宮·陵·園 등의 제사들을 다시 시행하고 다음해 2월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897년 10월에 고종이 환구단에 나아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이러한 국체의 변화는 제후국에 맞추어진 사전을 천자국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과제를 안겨주었다. 그러므로 광무개혁기 국가 사전은 복원된 전통적인 것에 새로운 의례들이 부가되어 훨씬 광범위한 체계를 지니게 되었다. 이하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을 사전의 大·中·小祀와 황실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제국의 성립과 사전의 변화

대한제국기 국가전례의 가장 큰 변화는 환구단의 건립과 환구제의 시행이었다. 환구제의 복원은 앞에서 볼 수 있듯이 갑오개혁기에 이미 실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환구제의 실제적인 제향은 아관파천 후 고종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된 후에 나타난다. 그리고 1897년 10월에 환구단이 새로운 장소에 세워지고 황제 즉위식

凡大中小祀月日, 並用舊曆. 又詔曰. 園丘社稷諸山川諸廟享祀, 其令宮內大臣掌禮卿, 參酌時宜, 考禮釐正.”

21) 『高宗實錄』卷 34, 高宗 33年 8月 14日

을 이곳에서 거행함으로써 환구제는 제국의 중심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다. 하늘에 제사하고 황제에 즉위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한제국의 성립이 세계 정세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유교적 전통과 명 나라의 멸망 이후 나타난 중화사상의 연장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환구단의 입지 선택이나 행용 절차에서는 고례의 회복보다 시의성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다.²²⁾ 전통적으로 남교에 세워졌던 것에 비해 대한제국기 환구단은 도성 내 경운궁 앞의 언덕 위에 건립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大韓禮典』²³⁾에서는 “그 예법은 취하였지만 그 발자취에 구애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郊라 하지 않고 園丘라 하였으니, 시대를 쫓아 마땅한 것을 제정하려는 뜻”이라고 하였다.²⁴⁾ 그리고 天壇과 地壇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한 곳에 皇天上帝와 皇地祇를 모셨으며, 從享位도 최소한의 수로 제한하였다.²⁵⁾ 제향의 종류 역시 중국의 전통적 제천의례인 祈穀, 雩祀, 明堂, 郊祀 모두가 아니라 정월 기곡제와 동지 교사만을 거행하여

- 22) 대한제국기 환구제의 복원과 변화에 관해선 즐고, 「대한제국기 환구제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30집(2003) 참조
- 23)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기 이전인 1897년 7월부터 史禮所라는 관청을 만들어 국가전례의 재정비를 준비하였는데 이때 만들어진 것이 『大韓禮典』이다. 이 예전집은 기존의 『국조오례의』를 벗어 버리고 천자의 나라가 갖추어야 할 국가의례와 의절을 정비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예전』의 편찬은 1898년 10월 사례소의 폐지로 인해 완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1897년 6월부터 1898년 10월까지의 구상을 담고 있다. ‘구상’이라 표현한 것은 이 예전의 내용이 실제 대한제국기의 행용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미완성이고 실제 행용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예전』을 통해 제국 초기 전례의 전반적인 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장서각에는 ‘대한예전’이란 이름의 책이 두 종류이다. 분류번호가 ‘귀K2-2123’로 되어있는 10권 10책의 『대한예전』과 ‘K2-2124’로 된 1책의 『대한예전』이 있다. 이 둘 모두 표제는 ‘대한예전’이지만, 전자는 속 표제 없이 목차로 이어지고, 후자는 속 표제가 ‘大韓禮典序例’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현재 장서각 서지사항에는 『대한예전』(귀K2-2123)과 『대한예전서례』(K2-2124)로 되어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국조오례의』와 『국조오례의서례』의 구분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한예전(K2-2123)』과 『대한예전서례』(K2-2124)는 별도의 책으로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모두 10책인 『대한예전(K2-2123)』의 구성이 크게 「序例」와 「儀註」로 되어 있으며, 이 서례와 『대한예전(K2-2124)』의 서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둘의 차이를 비교할 때 『대한예전서례』(K2-2124)가 『대한예전』(K2-2123)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한예전서례』(K2-2124)를 편집하다가 중단하고 새로 『대한예전(K2-2123)』을 편집한 것이다.
- 24) 『大韓禮典』(藏 귀K2-2123) 卷3, 壇壝圖設 “案歷代典禮 園丘壇皆在南郊而 本朝則在皇城內會賢坊慶運宮之東 只取其禮 不拘其跡 故立文不曰郊 而曰園丘 蓋因時制宜之意也”
- 25) 환구단은 3층으로 된 둥근 단 위에 원추 모양의 지붕을 세웠다. 제향시 모셔지는 신위를 층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단순화시켰다.

한편, 이러한 환구제의 복원과 제국의 성립은 국가 제사 전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제사의 위계를 변화시켰다. 조선시대 제사의 위계를 보면 사직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 실제적으로 종묘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았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사직이 종묘보다 높은 지위를 지녔다. 그러나 원구제의 복원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원구제 → 종묘 → 사직’의 순서로 사직의 위계질서를 만들었다.²⁶⁾ 사직은 地神과 혼유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제왕의 권한이 미치는 정치적 공간 내 토지신과 곡식신에 대한 제례였다. 제한된 영토에 자기 정치력을 발휘하는 제후에겐 이 사직이 국가와 동일시되지만, 명목상 천하를 자기 영토로 하고 있는 천자에게 사직의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조선시대 사직단에서 거행되었던 기곡제가 환구단으로 옮겨갔다. 애초 기곡제가 원구에서의 제향이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사직 기곡제는 제천의례의 폐지와 재난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변례라고 할 수 있다.²⁷⁾ 이제 기곡제가 환구단에서 거행된 것은 이런 변례를 정상적인 것으로 바꾼 것이었다.

둘째 南壇의 변화이다. 조선시대 남단은 風雲雷雨神를 주신으로 하고 산천신과 성황신을 배향한 제단이다. 천신과 지신을 함께 모셨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있었지만 남단은 조선 전기 사라진 圓丘壇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풍운뇌우의 신이 천신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단이 있었던 南郊의 공간적 상징 때문이었다.²⁸⁾ 그러나 환구단이 복설되면서 남단의 주향인 풍운뇌우신은

	서쪽	동쪽
1층	皇地祇	皇天上帝 (太祖)
2층	夜明	大明
3층	雲師·雨師·風伯·雷師·五鎮·四瀆· 大川·司土	北斗七星·五星·二十八宿·周天星辰· 五嶽·四海·名山·城隍

26) 『大韓禮典』卷2 序例 吉禮, 辨祀 大祀, “舊典大祀社稷爲首 宗廟次之 今依光武元年 圓丘行禮 諸詔勅所載 天地 宗廟社稷之文 更定序例如右”

27) 줄고, 「조선후기 기곡제 실행의 의미」, 『장서각』 제 4 권(2000), 167~168 쪽

28) 줄고, 「조선시대 공간 상징을 통한 王都 만들기 풍운뇌우단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제 권(2003), 106~109 쪽

환구단에 종사되고, 이들에 대한 독자적인 제사는 폐지된다. 이렇게 풍운뇌우신이 사라진 남단은 山川壇으로 개칭되어,²⁹⁾ 天下名山之神, 天下大川之神, 城隍之神, 郊壇司土之神을 새로 모시게 된다.

셋째, 전국 산천에 대한 새로운 공간적 배열을 가져온다. 환구단에서 제사를 거행할 때 아래층에 모셔지는 신위 가운데 五嶽, 五鎮, 四海, 四瀆은 조선시대의 嶽·海·瀆과 달리 구성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악·해·독·진 중에서 진이 빠져 있었고, 악·해·독에 해당하는 산천의 방위가 균일하게 배분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초기 성립되었기 때문에 고려 개성을 중심으로 산천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에는 五鎮을 포함하여 사방 또는 오방의 균일한 공간 구성을 이룬다.³⁰⁾

<표 2> 五嶽·五鎮·四海·四瀆의 구성

	五嶽		五鎮		四海		四瀆	
中	三角山	同	白岳山	-	-	-	-	-
東	金剛山	-	五臺山	-	東海(襄陽)		洛東江	-
南	智異山	同	俗離山	-	南海(羅州)		漢江	熊津·伽倻津
西	妙香山	松嶽	九月山	-	西海(豐川)		溟江	德津·平壤江·鴨綠江
北	白頭山	鼻白	長白山	-	北海(鏡城)	-	龍興江	豆滿江

한편, 환구제의 거행과 함께 대한제국기 사전에서 중요한 변화는 전쟁 관련 제향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關王廟에 대한 관심과 추존을 들 수 있다. 임진왜란 때 관우의 신병이 나타나 전쟁을 도왔다는 믿음에 의해 세워지기 시작한 관왕묘는 점차로 서울과 지방에 생겨났다. 대한제국 이전에 서울에는 남관왕묘(1598년 건립), 동관왕묘(1602년), 북관왕묘(1883) 등이 있었고 지방에는 전라도 古今島(1597년), 경상도 안동부(1598년), 경상도 성주목(1597), 전라도 남원부

29) 『宮內府來文』12 (奎17757), 光武元年十二月二十七日, “掌禮院卿臣金永穆謹奏 天下名山大川城隍司主位牌 已爲奉安於神室矣 享祀以每年春秋仲月上旬 磨鍊設行於南壇舊基 而壇號改稱 臣院不敢擅便 何以爲之乎 敢奏 光武元年十二月二十七日 奉旨 依奏山川壇稱號. 掌禮院卿臣金永穆謹奏 南壇星壇享祀 今既停廢矣 神室所奉兩壇位牌 令奉常司官 陪詣本壇舊址埋安之意 謹上奏 光武元年十二月二十七日 奉旨依奏”

30) 『高宗實錄』卷43, 高宗40年(光武7), 3月19日; 同月23日

(1599년)에 관왕묘가 있었다.³¹⁾ 특히 1883년에 세워진 북관왕묘는 황실을 보호하고 관왕의 충의를 권장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고, 갑신정변 중 고종이 피신했던 곳이기 때문에 고종에게는 각별한 것이었다.³²⁾

대한제국이 성립한 후에도 관왕묘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다. 1901년(광무5) 8월에 고종은 關王을 關帝로 격상시킬 명하고, 1902년(광무 6년) 10 월에는 궁내부 특진관 조병식의 발의로 유비, 관우, 장비를 함께 모신 崇義廟가 서대문 밖에 건립된다.³³⁾ 그리고 기존의 지방 관왕묘와 더불어 개성과 전주의 관왕묘에도 향과 축문을 중앙에서 내려보내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³⁴⁾

이러한 관왕묘에 대한 관심은 고종의 개인적인 신앙과 더불어 당시 위기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병식이 한나라 소열 황제(유비)와 관우, 장비를 위한 사당의 건립을 청할 때 그 까닭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漢나라 昭烈皇帝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마침 나라가 위험한 국면에 처하자 關羽, 張飛 두 사람과 힘과 마음을 합쳐 한나라를 도와 적들을 쳤습니다. 충성과 의리가 해와 별처럼 환히 빛나 후세 사람들이 충성스럽고 의리있는 사람을 들 때에는 반드시 劉備, 관우, 장비,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三義祠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³⁵⁾

결국, 나라의 위험한 상황에 본받을 인물로 위 세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
- 31) 송지원, 「關王廟 祭禮樂」, 詔巖權五聖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音樂學論叢(권오성 박사 화갑기념논총, 2000)』, 394~395 쪽
- 32) 북관왕묘의 건립에는 명성황후와 무당 이씨가 관련되어있다. 명성황후는 1882년(고종20) 임오군란에 당시 무당 이씨의 도움을 받았고 그후 그녀에게 眞靈君이란 작호까지 내렸다. 진령군은 자신이 관우의 혼령을 받고 태어난 관우의 딸이므로 사당을 지어 모시겠다는 요청을 하였고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를 승낙하여 건립된 것이 북관왕묘이다. 송지원, 위의 논문, 396쪽.
- 33) 崇義廟의 건립은 1904년(광무8년) 4월에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劉備(漢昭烈皇帝), 關羽(顯靈昭德義烈武安關帝), 張飛(桓侯張公) 이외에도 諸葛亮, 趙雲, 馬超, 黃忠, 王甫, 周倉, 趙累, 關平의 8위를 중향하였다.
- 34) 『高宗實錄』卷28, 高宗 28年 12月 24日; 『高宗實錄』卷39, 高宗 36年 4月 11日; 『高宗實錄』卷39, 高宗 36年 12月 16日; 『關王廟儀軌』(藏 叢-2422).
- 35) 『高宗實錄』卷42, 光武6, 10月 4日, “在昔漢昭烈皇帝龍潛之時 適當天下傾危之際 與關張二人 同心同力. 扶漢討賊 忠義炳炳 耀如日星 後世之稱忠義 必曰劉關張三人 此所以三義祠之設享也”

이러한 당시의 위기감은 갑오개혁기에 보이진 않던 선무사, 정무사의 제사가 대한 제국기에도 계속 유지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청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했던 갑오개혁기 상황과 달리 일본이 더 위협 세력으로 등장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제사는 지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충절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1900년(광무4)에 을미사변 때 순국한 훈련대 연대장 洪啓薰 이하 여러 장병을 위해 獎忠壇을 설립한 것 역시 이러한 위기 상황과 연관된 것이었다.³⁶⁾ 이와 같이 대한제국기 국가 제사는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위기라는 상황 인식 가운데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다.

3. 황실의 존숭과 표상

환구단을 복원하고 제천의례를 거행하는 것은 조선을 다른 국가와 동등한 독립 국가로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명분적인 차원에 그쳤지만 갑오개혁기부터 나타난 것이므로 대한제국기만의 특징이라 보기에는 미흡하다. 오히려 대한제국기 국가전례가 이전과 구별되는 점은 종묘를 비롯한 황실의 제향에서 찾을 수 있다. 고종의 입장에서 황제로의 등극은 외교적 수사만이 아니라 황제권을 국내의 여타 정치 권력과 차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이런 차별화 전략은 황실의 존숭을 통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갑오개혁기 근대 정부 조직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던 황실의 제례가 국민의 ‘大宗家로서의 황실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³⁷⁾

36) 장충단은 1900년 10월에 단이 완성되고 11월 12일에 첫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1901년(광무5) 2월에 陸軍法院長 白性基이 임오년과 을미년에 죽은 文臣은 군인이 아니며 단에 올려지지 못하였으므로 이들도 함께 이곳에서 제사지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때에 올려진 사람들은 임오년의 영의정 李最應, 판서 金輔鉉, 판서 閔謙鎬, 참관 閔昌植, 갑신년의 贊成 閔台鎬, 판서 趙寧夏, 참관 尹泰駿, 李祖淵, 中官 柳載賢, 을미년의 宮內大臣 李耕植, 侍從 林最洙, 參領 李道徹 등이다.

37) ‘大宗家’는 일반적으로 四代 이하의 奉祀에 그치는 小宗家와 달리 不遷位 시조를 모시는 종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대한제국기 수신교과서에는 황실을 국민의 대종가로 비유하여 국민이 자신의 종가를 높이듯이 황실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且 皇室은 國民의 大宗家라 一國生命의 休戚이 係호잇스스즉 國民이 其宗家를 尊奉호미 各其自家를 保重호미와 如케호은 自然호 敬慕에 出호이니 豈但 主權이 有호 君主로만 仰戴호而巳리오 然호즉 國民과 皇室의 其親密호 關係가 萬世에 亘호야도 不變호者인故로 國民된자는 必皇室을 尊崇호며 其國體를 擁護호미 實國民의 責

1) 遠祖의 墓域 정비

이 시기 황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전주 肇慶壇의 건립이다. 1898년 10월 議政府贊政 李鍾健의 건의로 시작된 이 사업은 전주 乾止山에 전하는 全州李氏의 시조 司空公 李翰의 묘역에 禁標를 정하고 단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이 조경단의 건립과 함께 삼척의 蘆洞과 東山에 전해져오는 穆祖의 부친 高麗將軍公과 모친 李氏의 묘를 찾아 묘역을 정하고, 각각 濬慶과 永慶의 봉호를 올려 그 제사를 사전에 포함시켰다.³⁸⁾

조경단 및 준경·영경묘의 건립에서 흥미로운 것은 불확실하게 전해져오던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성을 획득하게 되고 기념되었다는 점이다. 전주는 왕실의 발상지로서 조선 초기부터 중요시되었다. 일찍 태조의 御眞을 모신 慶基殿이 이곳에 건립되었고 영조대에는 시조의 사당으로 肇慶廟가 건립되었다. 그러나 고종대 논의가 된 건지산은 조선시대부터 시조의 무덤이 있던 장소로 전해졌지만, 삼국시대 조성된 묘는 이미 망실된 지 오래였기 때문에 그 묘역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1771년(영조47)에 奉常寺正 李廷重이 시조의 단을 건지산 묘역에 세울 것을 건의하였지만 묘역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곳과 무관한 慶基殿 뒤편에 肇慶廟를 건립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³⁹⁾

한편, 삼척에 있다는 목조의 부모 묘역 역시 조선시대 여러 번 논의되었던 사안이었다. 전주에 살던 목조는 그곳에 부담한 지방관과의 마찰로 인한 화를 피하여 이주한 곳이 삼척의 活著洞이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5 리 떨어진 蘆洞⁴⁰⁾과 북쪽 4리 떨어진 東山 寺洞⁴¹⁾에 있는 묘가 목조 부모의 묘라는 이야기는 세종

任이니라.” [徽文義塾 編輯部 編纂, 『中等 修身教科書』(光武10年 發行, 隆熙2年 再版) 卷2, 「第9課 忠國」; 30-31 쪽]

38) 조경단의 건립과 이후 선왕의 황제 추존과 배양에 대한 선행 연구로 서진교의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정책 연구」(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가 있다. 그는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한 이후 내부적으로 황제를 위협하는 세 세력들을 제압하고 황실의 존엄성을 세우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위의 논문, 13 쪽)

39) 『英祖實錄』 卷117, 英祖 47年 10月 05日(壬申); 『英祖實錄』 卷17, 英祖 47年 10月 7日(甲戌). 肇慶廟는 건지산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全州府 城內 慶基殿 뒤편에 세워졌다. 肇慶壇은 조선시대에는 전주부 도성 밖 북쪽에 세워졌으며,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속한다.

40) 현재 강원동 삼척시 미노면 활기리 노동이다.

41) 현재 강원도 삼척시 미노면 동산리이다.

대부터 있었다.42) 성종대에는 삼척의 두 묘를 수축하려고까지 하였으나 이 일은 결국 성사되지 못하고 묘역을 수호하는 데에만 그쳤다. 임난 후엔 황지 지역에 목조의 부모 묘가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43) 황지와 삼척을 두고 진위를 조사했으나 결말을 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조선시대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였던 전주와 삼척의 묘역에 대한 논의가 이 시기에 다시 제기되었지만, 선조의 묘역을 확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다. 당시 분위기는 이를 두고 논쟁하기보다 기정 사실화하고 성역화하는 데에 주력하는 모습이 짙다. 전주 건지산 시조의 묘역 찾기에 풍수가를 동원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판독불가능한 석괴였으며44), 삼척의 경우 이곳의 무덤을 목조 부모의 것으로 주장한 정철과 허목 두 인물의 유명세에 의해 정해졌다.45)

그리하여 전주 건지산 내 시조의 묘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흙을 돋우고 그 앞에 단과 비각을 세웠으며, 삼척의 주인을 알 수 없는 두 무덤 역시 수축하고 齋閣을 만들었다. 이로써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왕실의 선조 묘역이 확정되었으며, 이들은 국가 사전의 속례에 올려져 매년 한식일에 제향을 받게되었다.46)

더 나아가 이 사업은 묘역의 성역화에 그치지 않고 선조의 유적지에 기념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발전한다. 당시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의 수축과 함께 세워진 여러 기념물들을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주와 삼척의 묘역 외에도 목조와 태조 관련

42) 『世宗實錄』世宗 114, 世宗 28年 11月 11日(乙亥); 許穆『三陟志』「兩墓實記」

43) 인조대에 풍기 사람 박지영이란 사람이 자신의 꿈에 태조, 세종, 선조가 나타나 황지의 목조 고비 묘를 주민들이 파내고 투장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소문을 내었다. 『仁祖實錄』卷41, 仁祖 18年 7月 15日(甲午)

44) 건지산 내 정확한 묘역을 찾지 못하였을 때 役所의 監董委員인 李愚寬이란 자가 묘역의 疑似處에서 오래된 나무 뿌리를 제거하다 해독할 수 없는 글자가 새겨진 石塊 하나를 발견한 후 확증을 얻어 작업하게 된다. 『肇慶壇瀆慶墓永慶墓營建聽儀軌』(藏 奎K2-3581) 詔勅 乙亥 4月14日

45) 선조 13년(1580) 경진년에 감사 정철이 두 묘의 지형도를 그려 올리고 묘를 수축하는 예식을 행할 것을 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영의정 박순, 좌의정 노수신과 우의정 강사상 등이 수호만을 주장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許穆『三陟志』「眉老里」) 한편 삼척부사를 지낸 허목은 이곳의 묘를 목조의 고비를 확신했으며 그가 편찬한 『삼척지』에 『蘆東二墓記』를 직접 지었다.

46) 『肇慶壇瀆慶墓永慶墓營建聽儀軌』 詔勅, 己亥 6月 4日(陽曆 7月 11日)

<표 3> 全州·三陟 地域 皇室 紀念費

	기념물	기념 내용	비고
전주	肇慶壇	全州 李氏 始祖 司空公 墓域	전주 건지산
	梧木臺碑	太祖征南凱還時駐蹕之地	전주
	滋滿洞碑	穆祖舊潛遺墟	전주
	肇慶壇碑	乾止山 肇慶壇 前	전주 건지산
	完山碑	全州 李氏 發祥地	전주 완산
삼척	濬慶墓	穆祖의 考 高麗將軍公 墓	삼척 노동
	永慶墓	穆祖의 妣 李氏	삼척 동산
	活沓洞碑	穆祖의 舊宅社	삼척 활기동

출처 :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聽儀軌』(藏 貴K2-3581)

유적지에 비를 세워 기념하였다. 전주에서 살다가 삼척으로 이주한 목조의 행적이 남아있는 자만동과 활기동에 목조의 기념비를 세웠으며, 고려말 태조가 남쪽으로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전주에서 씨족의 사람들을 만났다는 오목대라는 곳에도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전주 이씨의 발상지인 완산에도 비를 세워 기념하고 외국인의 거주를 막았다.

2) 선왕의 추존과 配天

황실의 권위를 높이는 두 번째 사업은 1899년 12월 선왕의 追尊과 태조의 園丘壇 配天이다. 조종을 추송하는 문제는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98년 1월 2일 白南奎가 올린 상소에서 이미 제기되었지만 고종이 이를 거절하였다.⁴⁷⁾ 그러나 황위에 나아간 지 3년째 되는 이때에 고종이 먼저 제기하여 일을 성사시킨다.⁴⁸⁾

이에 앞서 8월에 고종은 莊獻世子(사도세자)를 莊宗으로 추존하고 경모궁에 있던 신주를 종묘로 옮겼다. 그리고 주나라를 비롯한 역대 전례를 본받았다.⁴⁹⁾ 莊宗,

47)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승정원 일기 175』(2002), 191~193 쪽 고종 34년 12월 11일

48) 이에 앞서 장지연이 1899년 3월에 태조의 배천 선왕의 추종 7묘제의 제정 등을 건의하는 소를 올린다. 그는 역대 왕들이 창업 후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부모를 포함한 선조를 추존을 한 것은, 예 중에서 尊親의 大義가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장지연 『韋庵文稿』卷, 「皇禮」第一, 第二(국사편찬위원회 편, 1971)

正宗(正祖), 純祖, 翼宗을 황제로 추존하고 50) 환구단에 태조를 配位로 모신다. 이러한 추존사업과 관련하여 종묘 제향에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하나는 종묘 및 영녕전 각 실의 신위판에서 명으로부터 받은 시호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때 제거된 시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1)

당시 명으로부터 받은 시호 삭거에 대한 논의는 면암 최익현의 상소문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당시 명의 시호를 제거하려는 사람들은 ‘태조를 고향제로 추존하면서 명에서 내린 시호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불편하다’ 또는 ‘이제 이미 自主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를 다시 쓰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52) 이러한 견해에 대해 최익현은 ‘탕 임금에 하 나라 신하되었던 것을 숨

49) 『高宗實錄』卷39, 高宗 36年 12月 3日, “上曰朕賴天地祖宗之驚佑 登大位于茲三載矣 郊祀配天先世追尊 尙今未遑 而朕嘗考歷代典禮 周以後稷配天 追王太王季文王. 唐宋以來 追隆至于禰祖曾高. 則參互是禮 將行太祖大王追尊配天之禮 莊宗大王正宗大王純祖大王翼宗大王追尊之制 而典禮至重且大 欲使卿等知之 故召見矣.”

50) 선왕을 황제로 추승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그 범위와 대상일 것이다. 고종은 자신으로부터 위로 4대에 해당하는 선왕을 황제로 추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종과 철종은 제외되었다. 고종은 황위의 계승을 영조에서 장조, 정조, 순조에서 곧바로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왕통의 계승은 영조의 세자이자 정조의 양부인 진종을 제외시키는 것이고, 현종과 철종 역시 계통의 정통에서 밀려나게 된다. 철종과 현종을 황제로 추승하지 않은 것은 주공이 태왕, 왕계, 문왕을 추존하면서도 방계들을 추존하지 않은 예를 본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高宗實錄』卷45, 高宗42年 1月 7日) 진종, 철종, 현종이 황제로 추존되는 것은 융희연간인 1908년 7월에 이르러서이다. 추존연대와 추존왕들에 대한 고종의 칭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종묘 제 13실에 모셔진 莊祖를 高祖考로 부르고, 정조를 曾祖考로, 순조를 祖考로, 문조를 考라 불렀다. 그러므로 고종은 문조의 양자로 입후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종에 대해 皇兄이라 부르고 자신을 孝弟라 하였으며 철종에 대해선 皇叔考라 부르고 자신을 孝從子라 칭하였다. 『宗廟儀軌』(藏2-2192) 참조.

主享者	추존연도	主享者에 대한 칭호	主祭者에 대한 칭호
太祖高皇帝	1899.12.19		
眞宗昭皇帝(정조의 양부)	1908.7.30		
莊祖懿皇帝(사도세자)	1899.12.19	皇高祖考	孝玄孫
正祖宣皇帝	1899.12.19	皇曾祖考	孝曾孫
純祖肅皇帝	1899.12.19	皇祖考	孝孫
文祖翼皇帝(효명세자)	1899.12.19	皇考	孝子
憲宗成皇帝	1908.7.30	皇兄	孝弟
哲宗章皇帝	1908.7.30	皇叔考	孝從子

51) 명에서 내린 시호의 내용은 『大韓禮典』에 나온 축문과 『都監奏本』(藏 貴K2-1977) 10, 광무3년 12월 15일의 내용을 비교하여 삭제된 것을 찾았다. 『都監奏本』은 1894년 12월부터 1909년 12월 까지 종백부와 궁내부 장례원에서 작성한 41책의 주본으로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표 4> 종묘 신위판에서 제거된 諡號

宗廟	1실	2실	3실	4실	5실	6실	7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康獻	恭定	莊憲	惠莊	康靖	恭僖	昭敬
永寧殿	5실	6실	8실	9실	10실	11실	12실
	정조	문종	덕종	예종	인종	명종	원종
	恭靖	恭順	懷簡	襄悼	榮靖	恭憲	恭良

기지 않았고 무왕이 은나라 신하였던 것을 숨기지 않았으며 반대하였지만 결국 조선시대 명으로부터 받은 시호는 삭제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제향일이다. 조선시대 종묘에서의 제향은 춘하추동의 맹월에 지내는 四時祭와 臘日祭를 합쳐 宗廟五享大祭라 하였다. 그런데 고종은 추존 후 납일제를 歲暮祭로 변경하고 기존의 납일에는 간략한 薦新으로 대신하였다. 이러한 세모제의 시행은 중국의 예를 통해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세모제가 중요한 제사로 등장한 것은 명나라부터이다. 唐代 開元禮엔 孟月の 四時祭와 납향을 합하여 五享이라 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송대까지 이어지며, 조선에서도 이 제도를 따랐다. 그러나 명나라는 사시의 맹월과 세모제를 합쳐 오향으로 삼았다. 특히 명대 종묘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모제를 裕享으로 지냈다는 점이다.⁵³⁾ 협향은 祧廟와 未祧廟 그리고 불천위의 신위를 모두 태조의 신위 앞에 진설하고 지내는 제사로서, 이전엔 3년에 1 차례 겨울에 지내던 것을 매년 세모제로 변경한 것이다. 고종은 명대의 이런 예식을 본받아 납향을 폐지하고 세모제를 거행하고자 했던 것이다.⁵⁴⁾

52) 崔益鉉, 『勉菴集』 疎「漱玉軒奏劄」, “此以有明賜諡言之 則說者以爲既尊太祖爲高皇帝 則有明賜諡之仍存 豈無不便乎 …又若以爲今既自主矣 不當復用大明所賜之諡也”.

53) 『大明會典』 卷87, 禮部45, 廟祀2, 裕祭, “國初以歲除日祭太廟與四時之祭合爲五享 其陳設樂章并與時享同 累朝因之 弘治(1488-1505)初既祧懿祖 始以其日奉祧主至太廟行裕祭禮 先期遣官祭告太廟 又遣官祭告懿祖于祧廟 告俱用祝文酒果 告畢 太常寺設懿祖神座于王殿西向 至日祭如儀 嘉靖十年(1531) 祧德祖 罷歲除祭 而以季冬中旬行太祫禮 太常寺設德祖神座于太廟正中南向 懿祖而下 以次東西向 十五年(1536) 奉懿祖熙祖仁祖太祖神座皆南向 成祖以下 東西向 陳設樂章 祝文 皆更定 而先期遣官祭告如前 二十四年(1545) 罷季冬中旬大祫 并罷祭告 每遇歲除裕祭 位次如十五年之制 祝則自德祖而下 備列帝后詩號 而祝文及陳設樂章竝如舊 二十八年(1549) 復祭告儀”

54) 대한제국기 세모제가 중국과 같이 裕祭로 지냈을 것 같지 않다. 중국과 달리 조선의 종묘는 협향

3) 眞殿의 건립과 황제권의 표상

殿閣을 지어 선왕의 초상을 공경하게 모시고 제례를 행하는 것은 조상을 존송하는 유교사회에서 매우 당연한 의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국가 제사에서 왕의 초상화를 모신 眞殿이 전적으로 환영받진 않았다. 특히 조선 전기 진전은 불교의 유습이라는 혐의와 신유학자들의 反聖像主義的 태도, 그리고 제사의 중첩 등을 이유로 제향에서 배제되었다. 궁궐에 있었던 선원전이 분향의 최소 의절만 행한 채 봉장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왕실의 원묘인 문소전이 애초 회상을 모셨다가 세종대에 신위로 교체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국가 제사에서 이러한 진전이 완전히 배제되진 않았다. 개성의 穆淸殿, 경주의 集慶殿, 평양의 永崇殿, 전주의 慶基殿, 영흥의 濬源殿, 양주의 奉先殿 등과 같이 여러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은 태조 또는 세조와 같이 불천위에 한정하고 지방에 세워진다는 전제하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임란을 거치면서 문소전 이하 대부분의 진전이 사라지고 경기전과 준원전 두 곳만이 남게 된 조선 후기에 진전의 건립은 전기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공간적으로 볼 때 진전의 건립은 지방보다 중앙에 집중되었다. 임란 때 파괴된 개성과 평양 그리고 경주의 진전들은 중건되지 않았지만 한성에는 南別殿(永禧殿), 선원전 등의 진전이 세워지고, 景慕宮 望廟樓, 毓祥宮 冷泉亭, 景祐宮 誠一軒 등에 왕들의 어진이 봉안되었다.⁵⁵⁾ 특히 이 중에서 남별전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진전

을 지내기에 부적절한 요소가 많았다. 조선 전기 협향이 사라진 것이 태조 위 추존 왕을 태조 앞으로 모셔오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듯이 위치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09 쪽 그 뿐 아니라 조선시대 조묘라 할 수 있는 영녕전은 춘추 시향 때에 별도로 제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4대의 지친이 지난 신위를 모셔 제사지내는 협제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세모제를 거행하였지만 時享의 형태로 거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고종은 이러한 세모제의 도입을 “태묘가 추존 이후 더없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묘의 격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高宗實錄』 卷39, 高宗36年 12月 31日, “詔曰 已詢問於大臣禮掌矣. 太廟追尊以後 事體莫重 自今歲暮大祭設行”)

55) 조선후기 지방에 세워진 예로 강화도의 永崇殿(태조), 奉先殿(세조), 長寧殿(숙종) 잡저시 영전, 萬寧殿(영조) 잡저시 영전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방민들에게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전쟁에 대비한 보관의 의미가 강하다. 영송전과 봉선전은 병자호란으로 폐지되고 만녕전의 영정은 영송전으로 옮겨진다. 조선시대 진전의 현황은 조선미 「조선왕조시대에 있

이었다. 인조대 세조와 원종을 모신 것에서 시작한 남별전은 1690년 숙종(6)에 永禧殿으로 전호가 바뀌고 새로 중건된 후 태조, 숙종, 영조, 순조의 어진을 모셨다. 또한 영조는 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의 속절체를 이곳에서 지내게 하고, 六享 중에서 한 번은 親祭로 올릴 것을 정식화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진전은 국왕이 선왕을 추모하고 가까이 모시는 주요한 의례적 공간이 되었다.

대한제국기 고종이 보여준 진전에 대한 관심은 조선후기 이러한 경향의 연속성 상에 있다.⁵⁶⁾ 그러나 고종의 진전 건립은 또 다른 면에서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광무개혁기에 진전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보면 경운궁 선원전 건립(1897), 선원전에 태조의 어진 봉안(1900), 영희전의 이건(1900), 경운궁 선원전의 화재와 중건(1901), 穆淸殿 중건과 태조 어진 봉안(1901), 평양의 西京 승격과 어진 및 예진 봉안(1902) 등이 있다. 이러한 진전의 건립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색이 보인다.

먼저, 고종은 선원전의 건립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종은 즉위 초기 경복궁을 건립할 때 이곳에 선원전을 지어 숙종 이하 6위의 어진을 봉안하였다.⁵⁷⁾

어서의 진전의 발달-문헌상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고고미술』 145 권(1980)을 참조

56) 광무연간의 주요 진전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殿號	소재지	봉안 어진	비고
慶基殿	전주	태조	*조선초기 건립
濬源殿	영흥	태조	*조선초기 건립
穆淸殿	개성	태조	*1901년 중건
太極殿	평양	고종	*1902년 건립
重華殿	평양	황태자(순종)	*1902년 건립
永禧殿	한성	태조(1688), 세조(1637) 원종(1637) 숙종(1748) 영조(1778) 순조(1858)	*1902년 경모궁터로 이건
濬源殿	한성	태조, 숙종(영조대), 영조(1777), 정조(1802), 순조(1846), 익조(1846), 헌종(1851)	*제실 태조 어진 모사 *1902년 화재로 중건
華寧殿	수원	정조	
望廟樓 (平樂殿)	한성	정조, 순조, 익종, 헌종, 철종	*고종36년 선희궁 평락전으로 이봉
冷泉亭	한성	영조	*육상궁 내
景祐宮	한성	순조, 익종	*경우궁 내

57) 1695년(숙종21)에는 창덕궁에 선원전이 건립된다. 1921년 창덕궁 후원에 선원전이 다시 지어져 원래의 것을 舊濬源殿이라 하였다. 당시에 숙종의 어진을 봉안하였으며 이후, 영조, 정조, 순조, 문조, 헌종의 어진이 모셔진다.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어한 후엔 이 곳에 선원전을 건립하고 어진들을 모셔온다.⁵⁸⁾ 이와같이 고종대에 선원전은 창덕궁, 경복궁, 경운궁 세 궁궐에 모두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자신이 머무는 궁궐에서 선왕의 淸容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이것은 종묘 및 남별전의 공간에 나아갈 경우 지나는 행차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선왕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대 또 다른 특징으로 지방 도시에 진전을 건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고종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경운궁의 선원전은 1900년 10월 14일에 화재로 인하여 전각과 어진 모두가 불에 타버리는 참사를 당한다. 이 선원전 중건 사업과 함께 진행된 것이 개성의 穆淸殿 중건이다. 1900년 11월 21일 中樞院議官 李命喆의 발의로 시작된 이 사업은, 다음 해 璿源殿의 태조 어진을 모본으로 삼아 모사하고 개성부 옛 터에 목청전을 다시 건립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또한, 1902년에는 고종 자신의 어진과 황태자 예진을 평양의 행궁 태극전과 중화전에 봉안한다. 이 일은 1901년 11월에 고종이 자신의 어진과 황태자의 예진을 제작하도록 명하는 데에서 시작하였다.⁵⁹⁾ 이 작업이 진행 중이던 1902년 5월 15일에 고종은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이곳에 어진과 예진을 봉안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전기 평양에 태조의 永崇殿이 있었던 전례를 들어 결정한 것으로 평양 행궁의 정전인 太極殿에 어진을, 東宮인 重華殿에 예진을 각각 봉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원전, 목청전, 풍덕전에 어진을 모사하고 봉안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어진의 행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00년 선원전에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영흥의 준원전에 봉안된 태조의 어진을 서울까지 모셔왔다. 여기서 모사 그 자체 뿐 아니라 영흥에서 서울까지의 675리를 어진을 모시고 왕복하는 행렬 그 자체가 장대한 행사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⁶⁰⁾ 영흥, 고원, 덕원, 안변, 신

58) 『高宗實錄』 卷35, 高宗 34年 6月 19日

59) 고종은 10년에 한번씩 어진을 모사하는 것이 이전의 규례임을 들어 어진 제작을 명하였다(『高宗實錄』 卷 41, 高宗 38年 11月 7日)

60) 영흥에서 서울까지 어진의 旅程은 이성미, 「朝鮮王朝 御眞 關聯 都監儀軌」(이성미·류송옥·강신항 공저, 『朝鮮時代 御眞 關係 都監儀軌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123 쪽)을 참조할 수 있다. 어진을 지방에서 모셔와 복사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도 있었다. 1688년(숙종14) 영희전에 태조의 영전을 모시기 위하여 전주 慶基殿에 봉안된 태조의 어진을 모셔왔으며, 1837년(헌종3)에는 준원전의 태조 어진이 도둑의 피해로 파손되어 새로 모사하기 위해서 준원전에 보관된 또 다른 구본을 모셔와 서울에서 모사한 후 봉안하였다. 1900년 선원전 어진 모사를 위한 어진 행렬

고산, 희양, 금화, 영평을 경유하여 4월 20일 서울에 도착한 어진을 맞이하기 위하여 고종은 태자와 함께 도성 밖에까지 나갔으며, 5월 17일에 다시 돌아갈 때에도 도성 밖까지 나와 배송하였다. 목청전에 태조의 어진을 모셔갈 때에도 고종은 황토현 新橋에 친임하여 태조의 어진을 경건히 배웅했으며, 문무백관은 永成門 앞 좌우에 陪立하였다가 구과밭까지 배종하고 입성하였다.⁶¹⁾

이러한 어진의 행렬은 당시로서 중요한 이벤트였음을 알 수 있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 태조의 배천과 추존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이러한 의례들을 통해서였을 것이다.⁶²⁾ 그러므로 대한제국기 진전의 건립은 황제와 祖宗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황실 및 황제의 이미지를 지방에까지 확산시켜 나가는 의례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IV. 통감부 시기 國祀와 帝室祀

1907년 8월 융희 연간에 들어선 후 당해 연도에는 제향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양위에 따른 연호의 개정과 祝式의 재조정이 중요한 일이었다.⁶³⁾ 그러나 해를 넘겨 1908년부터 국가 사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난다. 이러한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기존의 국가제사를 ‘國祀’와 ‘帝室祀’로 구분하는

은 1837년의 여정과 동일하다

61) 『皇城新聞』 光武5年 2月 14日 雜報

62) 어진을 지방에서 모셔와 복사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도 있었다. 1688년(숙종14) 영희전에 태조의 영전을 모시기 위하여 전주 慶基殿에 봉안된 태조의 어진을 모셔왔다. 1837년(헌종)에는 준원전의 태조 어진이 도둑의 피해로 파손되어 새로 모사하기 위해서 준원전에 보관된 또 다른 구분을 모셔와 서울에서 모사한 후 봉안하였다. 이성미·류송옥·강신항 공저 『조선시대 御眞 관계 都監儀軌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7-43 쪽

63) 융희 연간의 祝式 頭辭를 살펴보면, 종묘 및 궁원의 제사에서는“ 太皇帝 諱 倦勤傳禪屬皇帝 諱 謹遣 臣”, 일반 제사에는 “皇帝 謹遣 臣 敢昭告于”(大成殿 五聖), “皇帝 謹遣 臣 致祭于”(中祀), “皇帝 遣 臣 致祭于”(小祀)의 형태로 되어있다. 광무연간과 다른 점은 태황제의 존재에 의해 종묘 축식에 ‘太皇帝 諱 倦勤傳禪屬’ 부분이 첨가된 점과 문묘 대성전의 축식에 공자 이하 오성에게 ‘敢昭告’를 첨가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황제임에도 공자를 스승으로 높인 것이다. 이러한 경칭은 최익현 등의 유자들에 광무 연간부터 건의한 것이지만 시행되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성사된 것이다.

것과 전반적인 제향의 폐지 및 축소였다. 이 중에서 국사와 제실사의 구분은 이전 갑오개혁에서도 보이지 않은 새로운 범주였다. 1908년 1월 22일 궁내부에서는 내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낸다.⁶⁴⁾

享祀는 國家의 至重典式이오 風教關係에 亦莫此爲大也 崇奉制度는 須其參酌 古今하야 必從其宜 而一次釐正更改호야로 認호옵는바 從來의 規例를 按호오니 一切享祀는 殆爲帝室專管호와 國家의 祀典에 屬호 性質이 有호을 不拘호고 總히 帝室에서 此를 管檢호며 其祭需享費를 專히 負擔호에 在호야는 畢竟 其事體에 得宜호이아니온바 現今制度更張之時를 際호야 猶獨享祀에만 舊制를 株守호고 古例에 拘泥치 아니호지오니 其性質를 稽查호고 其所屬을 區分호와 此를 永爲定式케호옵고 一般國民으로 其祀典에 格例와 崇敬尊奉호올마를 威使知悉케호음이 妥當호갓습기 茲에 別紙를 添付仰佈호오니 照亮호신後 國祀는 閣部로 帝室祀는 宮內府로 管檢호야 各其祭需享費를 負擔호 制를 閣議에 提出호시와 永爲決定施行케호심을 爲要

위 인용문은, 국가의 향사는 帝室이 전담할 것과 국가의 祀典에 속할 성질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모두를 제실에서 담당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更張의 시대를 맞이하여 유독 향사만 옛 제도를 고수하여 이전 것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는, 향사의 각 성질을 살펴 國祀와 帝室祀로 구분하여 영원한 법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이에 따라 국사를 내각에서 제실사를 궁내부에서 담당하는 안을 만들어 제출한다. 이러한 주장 가운데 국가 제사의 중요성과 국민으로 하여금 崇敬尊奉해야 할 바를 알게 하는 제사의 기능적인 측면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제사와 제실의 제사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문서의 별첨에 첨부된 국사와 제실사의 구분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사와 제실사의 구분은 기존의 대·중·소사와 속례에 각기 대응하고 있다. 제실사에 속한 조경묘 이하는 진전, 혼전, 능·원·궁·묘에 해당 하는 것들이다.

조선시대 대중소사와 속례의 구분은 의리와 인정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지만 이

64) 『宮內府來文』(奎17757) 卷88, 隆熙2年1月22日

<표 5> 國祀와 帝室祀의 구분

구분	祭 祀	主管
國祀	園丘·宗廟·中霤·社稷·孔子廟·啓聖祠·四賢祠·山川·岳瀆·先農·先蠶·雩祀·司寒·歷代始祖·檀君·箕子以後至于高麗·關帝廟·崇義廟·蠶祭·大報壇·萬東廟·武烈祠·宣武祠·靖武祠·獎忠壇·厲祭·城隍祭·馬祖壇	內閣 主管
帝室祀	肇慶廟·肇慶壇·慶基殿·濬源殿·穆清殿·永禧殿·咸興本宮·永興本宮·華寧殿·濬源殿·景孝殿·懿孝殿·各陵園墓各宮廟	宮內府 主管

출처 : 『宮內府來文』(奎17757) 卷88, 隆熙 2年 1月 22日

들을 공과 사로 완전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전통의 왕조 국가에서 국가와 왕실이 구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였다. 앞서 살핀 갑오개혁기 개화파들은 근대 국가를 지향하면서 국가와 왕실을 의정부와 궁내부로 구분하여 왕실을 국가의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하였지만, 이러한 범주에서 제사는 둘로 구분되지 않았고 제사의 전체가 궁내부에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제 제사를 국가의 것과 황실의 것으로 구분하여 이 둘을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분은 황실이 가진 국가 대표의 상징적 기능을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무 개혁기에 왕실의 업무를 맡은 궁내부는 국가 전반에 관여하는 중심 기구였다. 일제 통감부는 국정에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를 통해 국가의 중심축을 형성하려한 황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자 국가의 중심의례들을 궁내부에서 분리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는 것이었다. 즉, 國祀를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위 안전대로 할 경우 많은 제사들을 국가가 정면으로 담당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동년 7월 23일에 <勅令 第 50號 享祀釐正件>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개혁안의 기본적인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⁶⁵⁾

1. 帝室과 무관한 祭祀는 宮內府에서 거행함을 금지하고 각기 그 소속에 이속하여 마련한다.
2. 時宜에 부적합 祭祀는 영구히 廢止한다

65) 『純宗實錄』 卷2, 純宗 1年 7月 23日

3. 合祀할 수 있는 廟社殿宮의 신위는 옮겨 봉안한다.
4. 大祭, 別祭, 俗祭, 朔望祭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祀典은 생략한다.
5. 神堂에 衙日마다 고하는 제사들은 영구히 폐지한다.
6. 犧牲과 祭物은 財政에 따라 절약한다.
7. 薦新할 제수들은 外貢을 폐지하고 매입하여 운영하고 나머지는 없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8. 儀式은 虛禮를 제거하고 誠敬을 근본으로 하여 祀典을 崇嚴하게 한다

위의 개혁안은 먼저 帝室과 관계없는 제사 즉, 국사의 제사를 궁내부에서 거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제사에서 황제를 배제시키려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사와 제실사의 구분에서 더 나아가 시의에 부적합한 제사 대상들을 폐지하고 긴급하지 않은 허례들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폐지하지 않는 것들도 合祀하고 중요하지 않은 제사들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희생와 제물, 의식들까지 시의에 맞게 재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 마련된 구체적 개혁안은 아래와 같다.

위 개혁안은 국사와 제실사의 구분에 따른 분담보다 제향의 대대적인 폐지에 주안점이 있다. 기존의 대중소사 중에서 종묘, 환궁, 사직, 영녕전 문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사들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지방의 사직, 역대시조, 문묘 등은 정부의 소관 아래 두었다. 한편, 제실사라 할 수 있는 궁묘과 진전에 대해서는 합사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영희전·목청전·화녕전·평약정·성일헌·냉천정 등의 진전을 선원전에 통폐합하고, 저경궁·대빈궁·선희궁·경우궁·연호궁의 신위를 육상궁에 합사하고, 나머지는 신위를 매안하여 제향을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황실 관련 제장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것은 종묘 이외에 선원전과 육상궁 뿐이었다. 한편 제향에 남은 제사들은 그 회수를 볼 때 속절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개혁의 정당성은 전통적인 예학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수많은 제향을 폐지하지만 제사의 대상인 신에 대한 비판은 찾을 수 없다.

제사는 나라의 예의 제도가 이를 통해 일어나는 만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표 6> <勅令 第50 號 享祀整正件>의 개혁 내용

구분	제사 대상	개혁안	
眞殿	永禧殿·穆淸殿·華寧殿·平樂亭·誠一軒	國有	濬源殿로 移奉
	冷泉亭		
宮	儲慶宮·大嬪宮·宣禧宮·景祐宮	國有	毓祥宮로 移安
	延祐宮		
	慶壽宮·永昭廟·文禧廟	國有	埋安
	宜嬪宮·		
大·中·小祀 (廢止·移安)	先農壇·先蠶壇	國有	社稷合祀
	山川壇·山川嶽瀆·雩祀壇·司寒壇·玉樞壇·七祀·四賢祠·厲壇·城隍壇·馬祖壇·武烈祠·旌忠壇·宣武壇·靖武壇	國有	폐지
	大報壇	궁내부 보관	폐지
	崇義廟·北關廟	국유	
	萬東廟·東關廟·南關廟·地方關廟	該地方官廳	
	歷代廟殿陵祠及地方에 設置한 社稷壇文廟	政府의 所管	
	國祀	宗廟	一年四次及二次告由祭.
園丘·社稷·永寧殿		一年二次	
轟神廟		一年一次	
文廟·啓聖祠		一年二次	
魂殿	景孝殿·懿孝殿	一年四次	
殿宮廟	肇慶廟·肇慶壇·慶基殿·濬源殿·咸興本宮·永興本宮·儲慶宮·大嬪宮·延祐宮·毓祥宮·宣禧宮	一年二次	
	景祐宮	一年二次及忌辰祭	
陵園墓	不遷位, 未遷位	一年一次及忌辰祭	
	遷位, 燕山墓·光海墓	一年一次	

그러나 예절이 번잡하면[繁縟] 마지막에 근본을 잃게 되는 폐단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이 당시의 조건에 맞게 예의를 제정한 것은 번잡한 것을 버리고 간소한 것을 취하자는 것이었다.[所以去其繁而就其簡也] 예의라는 것은 정성과 공경을 근본으로 삼아 그 제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의가 지나치게 후하면 분수에 지나치고[濫也] 분수에 지나친 예의는 귀신이 싫어하는 법이다[濫禮 神明之所以厭之者. 66]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건의 제사를 폐지하고 의식을 줄이는 것은

번잡함과 지나침을 제거하여 간이하고 정성과 공경이 갖든 의식으로 되돌리는 것 이란 주장이다. 번례를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황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상 사건의 전면적 폐지와 무용론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대 국가에서 사건의 존재 가능성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의 개정안에 기초한 사전 개정은 곧바로 시행된다. 진전의 어진과 궁묘의 신위를 옮겨 모시기 위한 공간의 건축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였지만, 1908년도 안에 모든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 만큼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7>은 당시 개혁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제사의 폐지 외에 제사 의식의 생략을 볼 수 있다. 대체를 거행할 때 제관들의 서계와 시행전 연습(肄儀), 친제시 희생과 祭器를 왕이 직접 살피는

<표 7> 융희 연간 祀典 改定의 진행 사항

구분	주요 개정 내용(융희 년.월.일)
합사 및 이봉	-華寧殿 御眞 移奉 (『宮內府來文』88, 융희2.9.24) -豐慶宮 太極殿·重華殿 御眞 이봉[11월 18일 거행](*『奏本』35, 융희2. 11. 9) -先農壇·先蠶壇 신위 移安[11월 19일 거행](『주본』35, 융희2.11.6) -永禧殿 各室 辟容 移奉[11월 26일 거행](『주본』35, 융희2.11.24) -冷泉殿 平樂亭 誠一軒 수용 이봉[11월 26일 이봉 융희2.11.24) -儲慶宮·大嬪宮·宣禧宮·景祐宮·延祐宮 신위이봉[11월 26일 거행(융희2.11.24) -平樂亭·誠一軒 辟容 이봉[11월 26일 거행] (『주본』35, 융희 2.11.24)
매안	-의빈궁·경수궁·영소묘·문희묘 신위 매안[9월 7일 거행(『주본』34, 융희2.8.26) -산천단 등 폐지 및 매안[9월 7일 거행(『주본』34, 융희2.8.26)
제물	-薦新 物種 중 代奉 가능한 품목(『주본』34, 융희 2.8.21) -제사 희생을 前奉常司에서 宰殺(『주본』34, 융희 2.8.26)
儀式的 생략	-大祭時 誓戒·肄儀 폐지(『주본』34, 융희2.8.26) -大祭親行時 親臨 省牲·省器 폐지(『주본』35, 융희2.9.1) -景祐宮 忌辰祭를 폐지(『宮內府來文』88, 宮發47號, 융희2.12.10) -眞殿 茶禮 폐지(『주본』35, 융희2.12.26) -함흥·영흥 本宮 衣衾 폐지(『주본』36, 융희3.2.12) -祝文 御押을 특별 칙명에 의한 親押 외 장례원에서 대행 융희2.8.3)
기타	-지방 城隍·厲祭 폐지(『황성신문』, 융희3.2.24)

*奏本: 『都監奏本』(藏 貴K2-1977)

66) 『純宗實錄』 卷2, 純宗 1年 7月 23日

省牲 및 省器, 그리고 축문에 왕이 서명하는 어압을 장례원이 대행하는 것 등은 제향에서 황제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특히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제사에서 희생을 도살하는 것은 제향을 지내는 곳이 었다. 전생서 관리가 희생에 쓸 소나 돼지를 祭所에 가지고 오면 헌관이 적합한지를 판정한 후 희생을 잡아 毛血을 따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삶았다. 그런데 1908년 (융희2) 8월 26일 조치에는 모든 제사에 쓸 짐승을 봉상사에 모아두었다가 장례원 관리가 간평한 후 그곳에서 도살하여 제소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제향의 절차에서 희생을 살피는 절차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서계와 이의를 폐지함으로써 제향을 준비하는 절차들이 사라지고 제향하는 시간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감부 개혁은 매우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위의 개정들은 제향 절차의 단순화와 준비 과정의 간소화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왕이 직접 서계에 임하고 희생과 제기를 살피는 절차는 영조대에 법식화된 것으로 국왕과 제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희생과 제기에 대한 감찰과 서계의 자리에 왕이 직접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신하들을 신칙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례를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이러한 절차들을 생략하는 것은 제향의 주체인 국왕을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개항 이후 국가 제례의 변모를 근대 국가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작된 갑오개혁기, 황제 중심의 광무개혁기,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통감부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시대의 특징을 간단히 서술하면 갑오개혁기는 의정부와 궁내부의 구분에 따라 政務와 祭祀의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며 국가제례에서 기양관 관련된 자연신과 왕실 관련 속제 그리고 중국 관련 제사 등을 배제하여 근대 독립 국가의 의례로 개혁하려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갑오개혁기 사전 개혁은 아관파천 이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광무개혁은 갑오개혁기 사전 개혁을 무효화시키고 이전의 제례를 회복시켰다. 대한제국의 성립 이후에는 천자의 격에 맞는 의례의 정비와 더불어 황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환구단의 건립과 제천의례의 복원은 이후 남단, 사직, 산천단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황제국에 맞는 사전의 정비를 가져왔다. 1899년엔 肇慶壇, 濬慶墓, 永慶墓 등 遠祖의 묘소를 성역화하고 국가 사전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태조와 4대의 조상을 황제로 추존하고, 선원전, 목청전, 영희전 등의 진전 중건 및 이전 등을 통해 고종은 독립된 나라의 황제임을 국민과 대외에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大宗家로서의 황실을 국가의 중심 상징으로 삼아 독립과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일제의 침략이 구체화되던 통감부 시기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국가제례의 전반적인 폐지와 축소를 향해 나아갔다. 일본의 입장에서 합방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황제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례 개혁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된 것이 國祀와 帝室祀의 구분이었다. 국사는 환구, 종묘 등 기존의 大祀, 中祀, 小祀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제실사는 속제를 중심으로 한 황실 제향들이었다. 조선시대 국가 제사를 국사와 제실사로 구분하는 것은 근대적 정부에서 황실의 업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1908년 7월에 享祀釐整에 의해 국사와 제실사의 구분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제사들이 폐지 또는 합사된다.

위와 같은 개항 이후 사전의 변화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제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을 찾을 수 없다. 갑오개혁기와 통감부 시기에 제사에 대한 전반적인 축소와 많은 의례들이 폐지되었지만, 제례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닌 ‘浮文’, ‘繁縟’, ‘濫禮’ 등과 같이 번잡한 것을 제거한다는 명분에 의존하고 있다. 제례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이 없었다는 것은 제사의 대상인 신에 대한 부정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농경에 필요한 자연신이 포함되었지만 사전의 전반적인 내용이 선왕을 비롯한 人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국왕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제사의 정치적 성격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 제사에 대한 새로운 범주의 구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갑오개혁기에는 정부의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제사가 의정부와 궁내부라는 조직의 구분에 따라 나뉘게 되었으며 제관의 차출 범위도 궁내부에 한정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제사는 국가의 공적인 일이라기보다 황실의 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대한제국기에는 이러한 구분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통감부 시기에 이르러 다시 국사와 제실사라는 구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 제사에 주도적이었던 황실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과 관계없이 정부와 제사의 구분, 황실 제사와 국가 제사의 구분, 그리고 그에 따른 제사의 운영방식은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단지 일제의 침략 속에서 이러한 물음과 해답을 자체적으로 찾지 못하고 국가 제사는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아쉬움을 남겼다.

셋째 국가 제사는 축소이든 확대이든 황실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 점이다. 개혁의 대상에서 속례가 중요한 대상으로 강조되었던 것도 황실과 국가 제사의 연결을 밀접하게 만든 부분이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당시 근대 국가의 형성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가와 황실의 관계 설정이었으며 이러한 대립점에서 제사는 황실과 연결되어 부침하였다. 결국 공화정이나 입헌군주제라는 政體의 설정과 연관된 것이지만, 종교사의 입장에서 황실의 제사를 국가의 공적 체계 속에서 포함시키려느냐 배제하느냐라는 문제였다. 통감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제사는 황실이란 범위에 한정되어 그 의미를 가지든지 아니면 폐지되는 경로를 겪게 되었다.

조선후기엔 사림정치의 와해와 탕평 정치의 구도에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두드러졌다. 『璿源系譜記略』의 발간이나, 시조묘인肇慶廟의 건립, 선왕의 유적지에 대한 기념사업 등은 이러한 왕실 존숭의 일면들이었다. 고종은 이러한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황실의 권위를 높였다. 이것은 비단 황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서원이 남설 속에서 문중의 사우로 변해가는 것이나, 족보의 간행이 활발해진 것 등 조선시대 사족이란 공적 시스템이 문중에게로 전도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家의 大衆化 또는 私事化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근대는 이러한 家들을 근대적 체계 속에 묶어내는 것이 큰 과제였으며, 국가 사건의 변화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史禮所 編, 『大韓禮典』(藏 貴K2-2123).
- 史禮所 編, 『大韓禮典序例』(藏 K2-2124).
- 掌禮院 編, 『都監奏本』(藏 貴K2-1977).
- 掌禮院 編, 『宗廟儀軌』(藏2-2192).
- 掌禮院 編, 『靖武祠儀軌』(藏 2-2520).
- 掌禮院 編, 『宣武祠儀軌』(藏2-2516).
- 掌禮院 編, 『關王廟儀軌』(藏 貴2-2422).
- 營建廳 編,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藏 7K2-3581).
- 議政府 編, 『宮內府來文』(奎 7757).
- 議政府 編, 『奏本』(奎 17702), 奏本 第85號(開國五百四年正月十四日奉), (영인본, 서울대학교규장각 편,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議政府 編; 奏本·議本 1』,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 觀象所 編, 『(大朝鮮開國五百五年歲次丙申)時憲曆』(奎章閣所藏 古7300-16(1)-2).
- 微文義塾 編輯部 編纂, 『中等 修身教科書』(光武10年 發行, 隆熙2年 再版) (영인본,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9』,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 許穆 『三陟志』, 『兩墓實記』 (허목 저; 배재홍 역, 『陟州誌』 삼척: 삼척시립박물관 2001)
- 張志淵, 『韋庵文稿』(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료총서 4; 위암문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1)
- 崔益鉉, 『勉菴集』
- 李東陽 等勅撰; 申時行 等奉勅重修, 『大明會典』, (영인본, 楊州: 楊州古籍書店, 1989)
- 『皇城新聞』(영인본, 서울: 韓國文化開發社, 1972)
- 『CD-ROM 國역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 주식회사
- 『CD-ROM 高宗純宗實錄』, 서울시스템 주식회사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0-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과찬 국사편찬위원회 2000.
- 김문식·송지원, 「국가제례의 변천과 복원」, 『서울 20세기 생활·문화 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학연구소, 2001.
- 박중서, 「한말 국가제사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정책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23 집, 서울대국사학과 1990.
- 송지원, 「關王廟 祭禮樂」, 韶巖權五聖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音樂學論叢』 권오성박사 화갑기념논총, 2000.
- 이민원, 「대한제국의 성립과 ‘광무개혁’, 독립협에 대한 연구성과 과제」, 『한국사론25』 한국연구의

회고와 전망Ⅲ), 국사편찬위원회, 1995.

이선근, 『한국사: 현대편』 서울: 을유문화사, 1963.

이성미·류송옥·강신항 공저, 『조선시대 御眞 관계 都監儀軌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이옥, 「조선후기 기곡제 실행의 의미. 장서각 소장 사직서의례와 등록을 중심으로」, 『장서각』4 집
2000.

_____, 「대한제국기 환구제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30 집 2003(봄).

_____, 「조선시대 공간 상징을 통한 왕도 만들기」, 『종교문화비평』3 호, 2003.

장석만, 「19세기말~20세기초 한·중·일 삼국의 정교분리담론」, 『역사와 현실』4 호 1990.

조선미, 「조선왕조시대에 있어서의 진전의 발달-문헌상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고고미술』
145, 1980.

최석영, 「한말 일제 강점기 國家祭禮 공간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권, 2002.

한철호, 「갑오개혁 주도세력의 현실대응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1 집 1999.

● 투고일 : 2004. 1. 27

● 심사완료일 : 2004. 3. 26

● 주제어(keyword) : 사전(State Register of ritual), 궁내부(Department of Royal Household),
대종가(Great Family), 국사(National ritual) 제실사(Royal ritual)